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심층평가 또는 신속평가의 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법률 제20518호, 2024. 10. 22. 공포, 2025. 10. 23. 시행)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자가 작성해야 하는 평가준비서의 기재항목으로 심층평가 대상 해당 여부를 추가하고, 신속평가의 대상으로 결정받으려는 사업자가 작성해야 하는 평가준비서에는 사업의 목적·개요 및 해당 사업이 신속평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근거 등을 포함하도록 그 작성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5. 6. 12. ~ 7. 2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심층평가 대상 해당 여부
제22조의3을 제22조의4로 하고,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22조의4(종전의 제2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67조의4제1항”을 “영 제67조의8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의3(신속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① 법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신속평가 평가준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및 개요
2. 해당 사업이 법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신속평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근거
3. 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4. 토지이용계획안
5. 지역 개황(사업이 실시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현황을 포함한다)
6. 평가 항목·범위·방법의 설정 방안
7.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및 반영 여부(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를 거친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재방법 등 신속평가 평가준비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①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8. (생략) <u><신설></u> ② (생략) <u><신설></u>	제8조(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등) ① ----- ----- ----- -----. 1. ~ 8. (현행과 같음) 9. <u>법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심층평가 대상 해당 여부</u> ② (현행과 같음) <u>제22조의3(신속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① 법 제52조의3 제1항에 따른 신속평가 평가준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u> 1. <u>사업의 목적 및 개요</u> 2. <u>해당 사업이 법 제52조의3제1항에 따른 신속평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근거</u> 3. <u>평가 대상지역의 설정</u> 4. <u>토지이용계획</u> 5. <u>지역 개황(사업이 실시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현황을 포함한다)</u> 6. <u>평가 항목·범위·방법의 설</u>

<u>제22조의3(환경영향평가서등 대</u> <u>행 추진계획의 공고) 영 제67조</u> <u>의4제1항</u>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7. (생 략)	<u>정 방안</u> <u>7.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u> <u>및 반영 여부(전략환경영향평</u> <u>가 협의를 거친 경우만 해당</u> <u>한다)</u> <u>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u> <u>기재방법 등 신속평가 평가준비</u> <u>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u> <u>부장관이 정한다.</u> <u>제22조의4(환경영향평가서등 대</u> <u>행 추진계획의 공고) 영 제67조</u> <u>의8제1항</u>----- ----- -----. 1. ~ 7. (현행과 같음)
--	---